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15가합51210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황예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민웅기

피고1. 주식회사 A

2. 망 B의 소송수계인 C

3. 주식회사 D

변론 종결2021. 8. 25.

판결 선고2021. 9.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481,687,940원 및 그 중 2,453,097,380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11%의, 2015. 3.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망 B(E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2,481,687,940원 및 그 중 2,453,097,380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3. 5.까지는 연 11%의,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가. 망 B과 피고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20, 74, 1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10. 체결한 각 근저당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은 망 B에게,

(1) 별지 목록 제1 내지 20, 12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 4. 11. 접수 제7502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별지 목록 제7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4. 4. 11. 접수 제976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2,481,687,940원 및 그 중 2,453,097,380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피고 A와 연대하여 망 B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위 2,481,687,940원 및 그 중 2,453,097,380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22.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한도 2,430,000,000원, 보증기간 2013. 5. 27. ~ 2014. 5. 26., 보증방법 회전보증(신용보증한도와 보증기간의 범위 내에서 계속 반복하여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 F 등 G 그룹의 회장인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한 피고 A의 구상금채무 등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2)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변제기 2014. 5. 26.로 정하여 무역어음 대출 명목으로 2,7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사전구상)

① 본인(피고 A)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즉시 이를 공사(원고)에 통지하고 공사로부터 통지·최고 등이 없더라도 공사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공사의 보증 채무 이행 전에 상환하겠습니다.

1. 압류·가압류·가처분 · 경매의 신청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4. H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 · 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보증채무이행금 등의 상환)

① 본인은 공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사에 상환하겠습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보증채무이행으로 공사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 이행 · 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② 본인은 제1항의 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에 공사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지급하겠습니다.

③ 본인과 보증인(B)은 공사가 대신 지급한 아래의 비용에 공사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공사에 지급하겠습니다.

1.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사가 대신 지급한 보험료
2. 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가 2014. 3. 20.경 회생 신청을 하는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4. 4. 30. 중소기업은행에 2,453,097,380원(원금 2,430,000,000원 및 이자 23,097,38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보전비용으로 28,590,56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과 관련하여 피고 A와 같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1%이다.

다. B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계약

(1) B은 2014. 4. 10.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20, 25, 26, 74, 12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은 585,000,000원, 채무자는 B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25, 26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0. 접수 제84100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1 내지 20, 120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 4. 11. 접수 제75021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이 사건 74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4. 4. 11. 접수 제9763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라. B의 사망 및 상속한정승인

B은 2018. 8. 22. 사망(이하 '망 B'이라 한다)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I, 자녀인 J,

피고 C이 있었는데, I, J은 2018. 10. 12.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7753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고, 피고 C은 2018. 11. 20.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3999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1. 25. 위 법원으로부터 위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 피고 A,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D에 대하여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3 내지 22, 27, 제10호증의 44, 을마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구상금 지급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주채무자인 피고 A와 연대보증인인 망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 및 채권보전비용의 합계 2,481,687,9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453,097,3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이때, 원고의 망 B에 대한 위와 같은 구상보증금 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다만, 망 B은 2018. 8.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C이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 C은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2,481,687,940원 및 그 중 2,453,097,38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결론

(1)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 합계 2,453,097,380원(2,430,000,000원 + 23,097,383원)과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 28,590,560원의 합계 2,481,687,940원(2,453,097,380원 + 28,590,560원) 및 그 중 원고의 대위변제금 2,453,097,38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3.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인 2015. 3. 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이 인하되었으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C은 피고 A와 연대하여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2,481,687,940원 및 그 중 2,453,097,38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5. 3. 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인 2015. 3. 6.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인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이 인하되었으므로, 앞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망 B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및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구상보증금채권)이 존재하고, 망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켰고, 피고 D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2)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인 2014. 4. 30.에서야 피고 A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구상보증금채권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구상보증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 및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인 2014. 3. 20.경 피고 A가 회생 신청을 하는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구상보증금채권의 원인된 사실이 이미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③ 당시 피고 A는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해서도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고 A의 재정적 상태가 쉽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가까운 2014. 4. 30.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구상보증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망 B에 대한 이 사건 구상보증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1 내지 120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4. 4. 10.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극재산의 합은 7,566,997,629원이다.

① 이 사건 1 내지 24 부동산: 989,772,928원(= 시가 1,038,798,288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49,025,360원)

- 시가 1,038,798,288원

- K 공동근저당권(이 사건 1 내지 26 부동산에 설정된 것)의 피담보채무액 1,200,000,000원¹⁾ 중

이 사건 1 내지 24 부동산의 부담부분 49,025,360원²⁾ ② 이 사건 25, 26 부동산:

2,208,281,451원(= 시가 24,340,846,090원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피담보채무액 및 임대차보증금 합계 22,132,564,639원)

- 시가 24,340,846,090원

- L은행 순번 13)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600,000,000원

- L은행 순번 14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150,000,000원

- L은행 순번 20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 L은행 순번 23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 M은행 순번 25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

- L은행 순번 27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합계 701,590,000원(= N회사 401,590,000원, O회사

262,000,000원, P회사 38,000,000원)⁴⁾ - K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200,000,000원 중

이 사건 25, 26 부동산의 부담부분 1,150,974,639원⁵⁾ - 한국산업은행 순번 29

공동근저당권(2014. 1. 14.자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

③ 이 사건 27 부동산: 0원(= 시가 6,203,379,000원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피담보채무액 합계 6,835,614,441원)

- 시가 6,203,379,000원

- Q은행 순번 1 공동근저당권(이 사건 27 내지 29 부동산에 설정된 것)의 피담보채무액

3,249,000,000원⁶⁾ 중 이 사건 27 부동산의 부담부분 2,899,174,846원⁷⁾ - R 순번 3

공동근저당권(이 사건 27, 28 부동산에 설정된 것)의 채권최고액⁸⁾ 700,000,000원 중 이 사건 27 부동산의 부담부분 634,824,658원⁹⁾ - S은행 순번 5 공동근저당권(이 사건 27 내지 29 부동산에 설정된 것)의 피담보채무액 2,200,000,000원¹⁰⁾ 중 이 사건 27 부동산의 부담부분 1,963,122,395원¹¹⁾ R 순번 7 공동근저당권(이 사건 27 내지 29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것. 2014. 2. 28.자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¹²⁾ 1,500,000,000원 중 이 사건 27 부동산의 부담부분 1,338,492,542원¹³⁾ (피담보채무액 중 706,257,101원만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결과가 됨)

④ 이 사건 28 부동산: 0원(= 시가 636,880,340원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피담보채무액 합계 701,789,853원)

- 시가 636,880,340원

- Q은행 순번 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249,000,000원 중 이 사건 28 부동산의 부담부분 297,648,662원¹⁴⁾ R 순번 2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중 이 사건 28 부동산의 부담부분 65,175,341원¹⁵⁾ S은행 순번 4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200,000,000원 중 이 사건 28 부동산의 부담부분 201,547,262원¹⁶⁾ R 순번 7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중 이 사건 28 부동산의 부담부분 137,418,588원¹⁷⁾ (피담보채무액 중 72,509,075원만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결과가 됨)

⑤ 이 사건 29 부동산: 46,600원(= 시가 111,642,300원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피담보채무액 합계 111,595,700원)

- 시가 111,642,300원

- Q은행 순번 1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249,000,000원 중 이 사건 29 부동산의 부담부분 52,176,490원¹⁸⁾ S은행 순번 3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2,200,000,000원 중 이 사건 29 부동산의 부담부분 35,330,341원¹⁹⁾ R 순번 7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중 이 사건 29 부동산의 부담부분 24,088,869원²⁰⁾ (피담보채무액 중 24,088,869원만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결과가 됨)

⑥ 이 사건 30 부동산: 120,484,000원

⑦ 이 사건 31 내지 118 부동산: 3,433,689,700원

⑧ 이 사건 119 부동산 중 B 지분: 623,000,000원(= 시가 1,673,000,000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050,000,000원)

- 시가 1,673,000,000원(= 시가 2,390,000,000원 × 7/10)

- L은행 순번 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500,000,000원 중 B 지분의 부담부분

1,050,000,000원²¹⁾ ⑨ 이 사건 120 부동산: 191,722,950원(위 토지의 임야대장상 면적인

142,017m²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m²당 개별공시지가 1,350원²²⁾을 곱한 금액이다)

2) 망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채무는 아래와 같고, 2014. 4. 10.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극재산의 합은 14,068,587,314원이다.

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2,189,825,744원(= 피고 A의 Q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에 관한 연대보증채권 1,541,663,381원 + 주식회사 F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에 관한 연대보증채권

648,162,363원)²³⁾ ② K에 대한 채무: 0원(근저당권에 의하여 전부 담보됨)

③ R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703,644,955원 [= 임대차보증금 2,206,500,000원²⁴⁾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부분 1,502,855,045원(= 700,000,000원 + 706,257,101원 +

72,509,075원 + 24,088,869원)]

④ 주식회사 T에 대한 채무: 2,500,000,000원(= 2012. 12. 26.자 대여금 1,500,000,000원 +

2013. 5. 15.자 대여금 1,000,000,000원)²⁵⁾ ⑤ U에 대한 채무: 250,000,000원(= 2013. 5. 30.자

대여금 50,000,000원 + 2013. 6. 17.자 대여금 100,000,000원 + 2013. 9. 25.자 대여금

100,000,000원)²⁶⁾ ⑥ 이 사건 29 부동산 관련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45,000,000원²⁷⁾ ⑦

신용정보공동망 조희서 관련 채무: 합계 6,589,102,425원

- 신용보증기금 2,420,910,425원²⁸⁾ 원고 2,430,000,000원

- V은행 1,738,192,000원²⁹⁾ ⑧ 조세채무: 합계 1,479,880,790원³⁰⁾ 강남구 95,568,750원

- 광주세무서 1,384,312,040원(= 562,727,320원 + 821,584,720원)

⑨ W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84,524,440원(2014. 4. 23.자 가압류결정 청구금액)³¹⁾ ⑩ 피고 D에

대한 채무: 226,608,960원(미회수 잔액 기준)32]인정근거 : 갑 제7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6, 20 내지 22호증, 을마 제1 내지 8호증, 을바 제7, 9호증, 을아 제2, 4,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액은 7,566,997,629원, 소극재산액은 14,068,587,314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의 망 B의 채무초과상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망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 A의 회생 신청이 있었던 점 등 앞서 살펴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망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 (1)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B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 (2)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 (3) 을마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2013. 8. 22. 망 B과 사이에 피고 A 주식 170만 주를 담보로 이자율 월 2.3%, 변제기 2013. 11. 21.로 정하여 1,000,000,000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D과 망 B은 2013. 11. 19.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담보주식수를 140만 주로, 이자율을 월 1.6%로, 변제기를 2014. 1. 21.로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를, 2014. 1. 21.에는 변제기를 2014. 3. 21.로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각

체결한 사실, 망 B은 2014. 1. 27.부터 2014. 3. 24.까지 위 대여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226,608,960원 상당의 대여금 잔액이 남은 사실, 피고 D은 2014. 4. 7. 망 B 등을 상대로 위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20434호)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은 2013. 8.경 망 B과 사이에 변제기를 2013. 11. 21.로 정하여 10억 원을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3. 11. 19. 및 2014. 1. 21. 두 차례에 걸쳐 변제기를 연장하여 주었는바, 피고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망 B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피고 D은 2014. 4. 7. 망 B을 상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뒤 3일 후인 2014. 4. 10. 망 B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D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① 망 B이 피고 D과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D은 망 B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민성철

판사이미경

판사홍사빈

별지

1) 을다 제20 내지 22호증 참조

2) 피담보채무액 1,200,000,000원 × (이 사건 1 내지 24 부동산의 시가 합계 1,038,798,288원 /

이 사건 1 내지 26 부동산의 시가 합계 25,426,798,288원)

3) 부동산등기부의 을구란 순번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

4) 을아 제5호증 참조

5) 피담보채무액 1,200,000,000원 × (이 사건 25, 26 부동산의 시가 합계 24,388,000,000원 / 이 사건 1 내지 26 부동산의 시가 합계 25,426,798,288원)

6) 을바 제9호증 회생계획안 참조

7) 피담보채무액 3,249,000,000원 × (이 사건 27 부동산 시가 6,203,379,000원 / 이 사건 27 내지 29 부동산 시가 합계 6,951,901,640원).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8)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액 706,500,000원이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을 초과한다.

9)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 (6,203,379,000원 / 이 사건 27, 28 부동산 시가 합계 6,840,259,340원)

10) 을아 제5호증 참조

11) 피담보채무액 2,200,000,000원 × (6,203,379,000원 / 6,951,901,640원)

12) 피담보채무액 1,500,000,000원과 동일하다.

13)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 (이 사건 27 부동산 시가 6,203,379,000원 / 이 사건 27 내지 29 부동산의 시가 합계 6,951,901,640원)

14) 피담보채무액 3,249,000,000원 × (이 사건 28 부동산 시가 636,880,340원 / 6,951,901,640원)

15)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 (636,880,340원 / 6,840,259,340원)

16) 피담보채무액 2,200,000,000원 × (636,880,340원 / 6,951,901,640원)

17)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 (이 사건 28 부동산 시가 636,880,340원 / 6,951,901,640원)

18) 피담보채무액 3,249,000,000원 × (이 사건 29 부동산 시가 111,642,300원 / 6,951,901,640원)

19) 피담보채무액 2,200,000,000원 × (111,642,300원 / 6,951,901,640원)

20)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 × (이 사건 29 부동산 시가 111,642,300원 /

6,951,901,640원)

21) 피담보채무액 1,500,000,000원 × 7/10

22) 갑 제8호증의 26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참조

23) 을아 제10호증 판결문 5쪽 참조

24) 을아 제2호증 참조

25) 을아 제4호증 참조

26) 을바 제7호증 참조

27) 을아 제10, 11호증 참조

28) 을아 제11호증 판결문 제19쪽 참조

29) 을아 제10, 11호증 참조

30) 을다 제16호증 배당표 참조

31) 갑 제7호증의 1 참조

32) 을마 제3호증